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9
----------	-----

제안연월일: 2025. 2. .

제안자: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미래교육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미래도시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 추가

1) 행정위원회: 미래교육재단 추가

2) 사회건설위원회: 미래도시국 추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본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라목을 가목으로 하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제3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나목, 다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중전의 다목) 중 “도시국”을 “미래도시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마. 도시공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1조제7항 중 “회의 규칙 제58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회사무국) ① (생략)</p> <p>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다.</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바. (생략)</p> <p><신설></p> <p>3. 사회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도시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16조(의회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 ----- -----.</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라.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 라목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마.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에 관한 사항</u></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미래도시국</u> ----- -</p>

라.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제2항제2호바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 ⑥ (생략)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3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생략)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④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도시공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④ (현행과 같음)